

판 결

사 건

약정금

원 고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

1.

2.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주 문

1. 피고 [redacted]은 원고에게 492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[redacted]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[redacted]사이에 생긴 부분의 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[redacted]이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